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44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김승원·박균택·김동아
한준호·서영교·김남희
김한규·이성윤·박지원
김용민·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윤석열·김건희 등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 “3대 특검” 수사를 승계하는 종합특검의 성격은 가지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피의자 등이 법률상 미비를 이용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및 측근 등을 동원하여 수사 또는 공소수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적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행 특검과의 사건 연계 및 자료 공유 절차와 공소수행 체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

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고,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소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검 간 사전 협의와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소수행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빈틈없이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단서 중 “13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과건검사”를 “과건검사와 과건군검사”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소검사의 임명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10명
이내로 공소검사로 둘 수 있다.

② 공소검사는 특별검사가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
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공소검사로 임명하여
야 한다.

③ 공소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
를 수행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
다.

제10조제4항 중 “1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중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첩한 수사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

제21조제3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되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등(이하 “수사기록 등”이라고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 계속 수사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신설>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③

----.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공소검사의 임명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10명 이내로 공소검사로 둘 수 있다.

② 공소검사는 특별검사가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공소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공소검사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특별수사관에 관한 사항은 공소검사에게 준용한다.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③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
검사는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
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
다.